

# EU 식품안전 정책 동향\*

곽 노 성  
(서원대학교 객원교수)

## 1. 서론

FTA 확산과 국가 간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국가 간 식품 교역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식품을 통한 영양공급은 물론 보다 건강한 삶에 대한 기대와 함께 음식 문화에 대한 국민들의 높은 관심 속에서 근간이 되는 식품안전의 수준 향상이 요구되고 있다. 과거에는 식품안전관리가 개별 국가의 내부적인 이슈였으나,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사고 사례에서도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이제는 국가 간 높은 교역량, 인터넷 등을 통한 관련 정보의 빠른 전파 등으로 인해 글로벌 이슈가 되고 있다.

식품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높은 기대와 함께, 사건사고 및 이슈에 대한 글로벌 동조 현상으로 인해 Codex, WTO 등 국제기구에는 물론 미국, 일본, EU 등 주요 선진국의 식품안전 정책 동향을 파악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특히, EU는 미국, 일본과 달리 28개 회원국으로 구성되어 있는 국가 연합체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개별 국가와 같이 식품안전에 대한 기준설정은 물론 위기대응 등을 직접 수행하고 있다. 그 결과, EU 회원국이 모두 회원국으로 참여하는 Codex 등 국제기구에서 EU의 입장을 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회원국 간 합의를 위해 관련 정보의 공개 또한 어느 국가보다

\* (forsome7@gmail.com).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본 원고에서는 우리나라 식품안전관리의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 향후 EU 등과의 국제협상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목적으로 EU의 식품안전 정책 전반을 살펴보았다. 특히 EU 식품안전 법령체계의 기본이 되는 일반식품법(General Food Law)<sup>1)</sup>과 관리체계의 핵심인 EU집행위원회와 유럽식품안전청을 중점적으로 살펴 보았다. 또한, 정책 흐름을 파악하고자 최근 EU에서 제정한 규제를 조사·분석하였다.

## 2. 식품안전관리 체계

### 2.1. 법령 체계

#### 2.1.1. EU 규제의 틀

EU의 법령은 기본법(Primary Legislation), 일반법(Secondary Legislation), 판례법(Case Law)의 형태로 구분된다.<sup>2)</sup> 기본법은 회원국 간의 직접적인 협상을 통해 합의된 조약(Treaty) 또는 이와 동등한 수준의 위상을 가진 협정을 말한다. 이 경우, 개별 회원국의 공식적인 비준을 필요로 한다. 일반법은 EU 기관을 통해 결정되는 법으로 <표 1>에 제시된 바와 같이 구속력, 적용 대상 등의 차이에 따라 세분화된다.<sup>3)</sup> 판례법은 유럽

표 1 EU의 법적 행위 유형

구분	내용
법규 (Regulations)	법규는 강제력이 있는 법률적 행위로 EU 전역에서 효력을 발휘함. 예를 들어 EU가 파르마 햄과 같이 특정지역 농산물의 명칭을 보호하고자 하는 경우, 이사회는 법규를 채택함.
지침 (Directives)	지침은 모든 EU 회원국이 달성해야하는 목표를 설정하는 법률적 행위임. 하지만, 방법(how)은 개별 회원국에 달려 있음. 과도한 근무시간을 제한하기 위한 근무시간 지침이 여기에 해당됨. 지침에서는 최소 휴식 기간과 최대 근무시간을 설정하며, 회원국은 이를 집행하기 위해 자국의 법령을 개정함.
결정 (Decisions)	결정은 특정 회원국인 회사와 같은 특정된 경우에 한하여 직접적인 구속력을 가짐. 예를 들어 집행위원회가 마이크로소프트의 독점 행위에 대해 벌금을 부과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됨.
권고 (Recommendations)	권고는 강제력이 없음. 집행위원회가 금융분야 종사자들이 과도하게 위험을 감수하지 않도록 보수규정을 운영하도록 권고하는데, 이는 법적인 결과를 가져오지는 않음. 권고는 기관이 특정 대상에 대해 법적인 강제력 없이 입장을 피력하는데 사용됨.
의견(Opinions)	의견은 강제력 없이 기관의 입장을 표명하는데 사용됨. 예를 들어, 지역위원회가 어떻게 하면 지역이 EU의 에너지 목표를 달성할 것인가에 대한 의견을 제시함.

자료: [http://europa.eu/eu-law/decision-making/legal-acts/index\\_en.htm](http://europa.eu/eu-law/decision-making/legal-acts/index_en.htm)

1) 법규 178/2002/EC.

2) [http://www.fsai.ie/legislation/acts\\_and\\_law.html](http://www.fsai.ie/legislation/acts_and_law.html)

3) [http://europa.eu/eu-law/decision-making/legal-acts/index\\_en.htm](http://europa.eu/eu-law/decision-making/legal-acts/index_en.htm)

---

사법재판소(European Court of Justice)의 판결을 말한다.

식품안전은 단일시장(Single Market) 원칙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대표적 분야 중 하나로 주로 법규가 적용된다. 과거에는 지침을 통해 회원국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였으나, 회원국의 지침 준수가 늦어지는 경우 등이 발생하면 최근에서는 주로 법규를 통해 식품안전 규제를 운영하고 있다.

법규는 통상 그 자체로 존재하며 우리의 시행령, 시행규칙과 같은 하위 법규를 별도로 두지 않는다. 대신, 우리의 고시에 규정되는 세세한 기술적인 사항까지 모두 법규에 명시한다. 또한, 통상적으로 우리와 달리 기존 법규를 개정할 경우에도 기존 법규와 개정내용이 통합된 법규를 제공하지 않는다. 대신 기존 법규와 개정 법규를 각기 다른 법규로 구분한다. 그렇다보니 각 분야별로 상당히 많은 법규와 지침이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다.

#### 2.1.2. 일반식품법<sup>4)</sup>

일반식품법(General Food Law)으로 통칭되는 법규 178/2002/EC는 2002년 1월 제정되었으며, 식품 규제가 일관성 있게 마련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동시에 EU 차원에서 규제가 설정되어 있지 않은 분야에서 회원국 간 상호인정을 통해 내부시장기능이 작동하도록 하는 틀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모두 5장 15절 65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식품 관련 정의와 함께 사업자의 책무 등과 같은 기본적인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표 2 참조>. 유럽식품안전청(European Food Safety Authority)과 집행위원회를 지원하는 식품체인동물보건상임위원회(Standing Committee on the Food Chain and Animal Health)의 구성과 활동, 긴급경보체계(Rapid Alert System)와 같은 긴급대응에 관한 사항도 규정하고 있다. 그 밖에 회원국 간의 충돌 발생 시 이를 조정하는 절차도 규정하고 있다.

EU집행위원회는 일반식품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효과적인 시행을 위해 일반적 요구사항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 사전예방원칙에 대한 위원회 의견, 이력추적제 현황, 사업자의 책임, 긴급대응 절차, 위기관리 등에 대한 자료<sup>5)</sup>를 제공하고 있다.

---

4) [http://ec.europa.eu/food/food/foodlaw/index\\_en.htm](http://ec.europa.eu/food/food/foodlaw/index_en.htm)

5) [http://ec.europa.eu/food/food/foodlaw/index\\_en.htm](http://ec.europa.eu/food/food/foodlaw/index_en.htm)

표 2 일반식품법의 구성

제1장 범위 및 정의(Scope and Definitions)	
	제1조 목적 및 범위(Aim and Scope) 제2조 식품의 정의(Definition of "Food") 제3조 기타 정의(Other Definitions : Food Law, Food Business, Feed Business, Risk, Traceability, Primary Production, Final Consumer 등)
제2장 일반식품법(General Food Law)	
	제4조 범위(Scope)
제1절 식품법의 일반원칙 (General Principles of Food Law)	제5조 일반목적(General Objectives) 제6조 위험성 분석(Risk Analysis) 제7조 사전예방원칙(Precautionary Principle) 제8조 소비자 이해의 보호(Protection of Consumers' Interests)
제2절 투명성 원칙 (Principles of Transparency)	제9조 대중 의견수렴(Public Consultation) 제10조 대중 정보(Public Information)
제3절 식품거래의 일반적 의무 (General Obligations of Food Trade)	제11조 식품과 사료의 수입(Food and Feed Imported Into the Community) 제12조 식품과 사료의 수출(Food and Feed Exported From the Community) 제13조 국제기준(International Standards)
제4절 식품법의 일반적 요구사항 (General Requirements of Food Law)	제14조 식품의 안전 요구사항(Food Safety Requirements) 제15조 사료의 안전 요구사항(Feed Safety Requirements) 제16조 제시(Presentation) 제17조 책임(Responsibilities) 제18조 이력추적(Traceability) 제19조 식품사업자의 식품에 대한 책임(Responsibilities For Food: Food Business Operators) 제20조 사료사업자의 사료에 대한 책임(Responsibilities For Feed: Feed Business Operators) 제21조 법적 책임(Liability)
제3장 유럽식품안전청(European Food Safety Authority)	
제1절 미션과 과제 (Mission and Tasks)	제22조 기구의 미션(Mission of the Authority) 제23조 기구의 과제(Article 23 Tasks of the Authority)
제2절 조직 (Organization)	제24조 기구 내 기관들(Bodies of the Authority) 제25조 관리위원회(Management Board) 제26조 사무총장(Executive Director) 제27조 자문포럼(Advisory Forum) 제28조 과학위원회 및 과학패널(Scientific Committee and Scientific Panels)
제3절 운영 (Operation)	제29조 과학적 의견(Scientific Opinions) 제30조 과학적 의견의 확산(Diverging Scientific Opinions) 제31조 과학 및 기술적 지원(Scientific and Technical Assistance) 제32조 과학적 학습(Scientific Studies) 제33조 데이터 수집(Collection of Data) 제34조 신종 위험의 인식(Identification of Emerging Risks) 제35조 긴급경보체계(Rapid Alert System) 제36조 기구의 미션에 해당하는 분야에서 운영되는 관련 기구들의 네트워크(Networking of Organizations Operating In the Fields Within the Authority's Mission)

표 2 일반식품법의 구성(계속)

제3장 유럽식품안전청(European Food Safety Authority)	
제4절 독립성, 투명성, 비밀유지와 커뮤니케이션 (Independence, Transparency, Confidentiality and Communication)	제37조 독립성(Independence) 제38조 투명성(Transparency) 제39조 비밀유지(Confidentiality) 제40조 기구로부터의 커뮤니케이션(Communications From the Authority) 제41조 문헌에 접근(Access To Documents) 제42조 소비자, 생산자와 기타 이해 집단(Consumers, Producers and Other Interested Parties)
제5절 재정 규정 (Financial Provisions)	제43조 기구의 예산 승인(Adoption of the Authority's Budget) 제44조 기구 예산의 집행(Implementation of the Authority's Budget) 제44조 기구가 받는 수수료(Fees Received By the Authority)
제6절 일반규정 (General Provisions)	제46조 법적 제제와 우대(Legal Personality and Privileges) 제47조 법적 책임(Liability) 제48조 직원(Staff) 제49조 제3국의 참여(Participation of Third Countries)
제4장 긴급경보체계, 위기관리 및 비상(Rapid Alert System, Crisis Management and Emergencies)	
제1절 긴급경보체계 (Rapid Alert System)	제50조 긴급경보체계(Rapid Alert System) 제51조 방안의 집행(Implementing Measures) 제52조 긴급경보체계 관련 대외비 규칙 (Confidentiality Rules For the Rapid Alert System)
제2절 비상(Emergencies)	제53조 회원국에서 기인하거나 제3국에서 수입된 식품과 사료에 대한 비상수단 (Emergency Measures For Food and Feed of Community Origin or Imported From A Third Country) 제54조 기타 비상수단(Other Emergency Measures)
제3절 위기관리 (Crisis Management)	제55조 위기관리의 일반계획(General Plan For Crisis Management) 제56조 위기초차반(Crisis Unit) 제57조 위기초차반의 임무(Tasks of the Crisis Unit)
제5장 절차 및 최종 규정(Procedures and Final Provisions)	
제1절 위원회와 중재절차 (Committee and Mediation Procedures)	제58조 위원회(Committee) 제59조 위원회에 할당된 기능(Functions Assigned to the Committee) 제60조 중재절차(Mediation Procedure)
제2절 최종규정 (Final Provisions)	제61조 리뷰 규정(Review Clause) 제62조 유럽식품안전청과 식품체인 및 동물보건상임위원회에 대한 언급 (References to the European Food Safety Authority and to the Standing Committee on the Food Chain and Animal Health) 제63조 의약품 제품의 평가에 대한 유럽기구의 권한(Competence of the European Agency For the Evaluation of Medicinal Products) 제64조 기구의 운영의 개시(Commencement of the Authority's Operation) 제65조 시행(Entry Into Force)

자료: <http://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uri=CELEX:32002R0178>.

### 2.1.3. 동물영양

EU에서는 동물보건은 물론 동물복지까지 식품관리의 일부로 인식하고 있으며, 주요 법규와 지침은 <표 3>과 같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법규는 기존 8개의 지침을 통합한 법규 767/2009/EC으로 모두 6장 33조로 구성되어 있다.

사료 등 기본적인 용어에 대한 정의는 일반식품법에서 정한 것을 준용하고 있다. 다만, 식품생산동물(Food-Producing Animal) 등 사료와 특별히 관련되는 용어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의를 하고 있다. 사료의 안전성과 판매에 대한 요구조건, 사료 첨가물의 함량, 표시 광고, 사료용 물질 목록과 우수 표시지침(Community Catalogue of Feed Materials and Community Codes of Good Labelling Practice)도 제시되어 있다. 한마디로 사료 분야에서의 기본법이라고 할 수 있다.

표 3 사료 관련 주요 법규 및 지침

구분	내용
법규 767/2009/EC	법규 1831/2003/EC을 개정하고 이사회 지침 79/373/EEC 등을 통합한 법규로 사료의 판매에 사용에 대한 사항을 규정
법규 1831/2003/EC	동물영양에서 사용하는 첨가제에 대한 사항을 규정
법규 183/2005/EC	사료 위생에 대한 요구조건을 규정
지침 1999/29/EC	동물영양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물질과 제품에 대한 사항을 규정
지침 2002/32/EC	동물사료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물질을 규정
지침 90/167/EEC	의료용 사료의 준비와 시장에서의 판매 및 사용에 대한 사항을 규정
지침 70/373/EEC	사료의 공공관리를 위한 채취 및 분석방법을 규정
지침 95/53/EC	동물영양 분야에서 공식적인 감시조직에 대한 원칙을 규정

자료: 내부자료, 2014.

### 2.1.4. 표시 및 영양<sup>6)</sup>

현재 일반적인 식품표시에 관한 사항은 지침 2000/13/EC에 규정되어 있다. 다만, 이 지침은 2014년 12월 13일부터 법규 1169/2011/EU으로 대체된다. 그간 EU 표시는 지침(Directive) 2000/13/EC을 중심으로 운영되었다. 지침이다보니 회원국의 법령 개정을 통해 집행되었고 그렇다 보니 규제 집행의 일관성이 저하되었다.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2011년 기존 식품표시에 대한 지침(2000/13/EC)과 영양표시에 대한 지침(90/496/EEC)을 통합한 법규를 마련하게 되었다. 법규 1169/2011/EU는 모두 55조로 되

6) <http://www.fsai.ie/workarea/linkit.aspx?linkidentifier=id&itemid=100>

어 있으며, 2014년 12월 13일부터 효력을 발휘한다. 법규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식품정보에 대한 일반원칙은 물론 의무적으로 표시해야하는 사항, 식품의 명칭, 성분목록, 사용법, 알코올 함량, 영양표시 등 우리나라 「식품 등의 표시기준(식약처 고시)」에 있는 사항이 규정되어 있다.

일반표시 이외에 건강정보표시(Health Claim)에 관한 사항도 법규를 통해 규정하고 있다. 건강정보표시에 관한 내용은 법규 1924/2006/EC에 규정되어 있다. 여기에는 정보표시에 대한 일반원칙과 함께 EU 승인을 위한 신청절차 등이 규정되어 있다. 이 법규는 법규 107/2008/EC 등에 의해 개정되었다. 이와 별도로 집행위원회에서는 법규 1924/2006/EC의 집행을 위해 법규 353/2008/EC 등을 마련하였다.

특수영양식품의 일반적인 사항은 지침 2009/39/EC와 법규 953/2009/EC에 규정되어 있다. 이와 별도로 영유아조제식, 의료용식품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법규가 운영된다. 영유아조제식의 경우, 지침 2006/141/EC이 적용된다. 여기에는 잔류농약의 함량에 대한 사항도 포함되어 있다. 그 밖에 체중조절용 식품, 의료목적용 식품에 대해서도 953/2009/EC 등 여러 법규와 지침이 적용된다.

#### 2.1.5. 바이오테크놀로지 및 신종식품<sup>7)8)</sup>

기존에 섭취하지 않던 식품, 즉 신종식품의 관리를 위해 도입된 법규는 258/97/EC이다.<sup>9)</sup> 여기에는 실질적 동등성(substantial equivalence)이라는 개념을 기반으로 새롭게 시장에 도입되는 식품에 대한 안전성 평가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GMO 표시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규 1829/2003/EC에 규정되어 있으며, GM종자, 가공 여부 등에 따라 법규 1830/2003/EC, 1139/98/EC 등이 적용된다.<sup>10)</sup> 이에 따라, GMO가 함유된 식품에는 함유되었다는 표시해야 한다. 다만, 의도적으로 함유시키지 않고 그 함량이 0.9% 이하인 경우에는 표시를 하지 않아도 처벌받지 않는다.<sup>11)</sup>

당초 GMO는 신종식품 관련 법규(258/97/EC)의 적용을 받았다. 사료로 사용되는 경우 등에 대한 관리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GMO 관련 법규(1829/2003/EC)가 별도로 마련되었고, 이에 따라, GMO에 대한 사항은 신종식품 관련 법규(258/97/EC)에서 제외되었다.

7) [http://ec.europa.eu/food/food/biotechnology/index\\_en.htm](http://ec.europa.eu/food/food/biotechnology/index_en.htm)

8) [http://ec.europa.eu/food/food/biotechnology/novelfood/index\\_en.htm](http://ec.europa.eu/food/food/biotechnology/novelfood/index_en.htm)

9) [http://ec.europa.eu/food/food/biotechnology/novelfood/initiatives\\_en.htm](http://ec.europa.eu/food/food/biotechnology/novelfood/initiatives_en.htm)

10) [http://www.fsai.ie/legislation/food\\_legislation/gmos/labelling\\_of\\_gm\\_food.html](http://www.fsai.ie/legislation/food_legislation/gmos/labelling_of_gm_food.html)

11) [http://ec.europa.eu/food/food/biotechnology/gmo\\_labelling\\_en.htm](http://ec.europa.eu/food/food/biotechnology/gmo_labelling_en.htm)

### 2.1.6. 와약적 안전

식품증진제의 경우, 2008년 기존 4개의 지침을 대체하는 4개의 법규가 제정되었다.<sup>12)</sup> 이들 법규는 1개의 기본 법규와 3개의 품목별 법규로 구성되어 있다<표 4 참조>.<sup>13)</sup> 일반적인 사항은 1331/2008/EC에 규정되어 있으며, 식품효소제, 식품첨가물, 향료에 대해서는 각기 다른 법규가 별도로 적용된다.

표 4 식품첨가물 등 관련 법규 현황

법규 번호	내용
1331/2008/EC	일반 절차 규정
1332/2008/EC	식품 효소제(Food Enzymes)
1333/2008/EC	식품첨가물(Food Additives)
1334/2008/EC	향료 및 향료적 특성을 가진 특정 식품원재료 (Flavouring and Certain Food Ingredients with Flavouring Properties)

자료: 내부자료, 2014.

동물성식품에서 수의용약품의 최대 잔류량을 설정하는 절차는 법규 2377/90/EEC에 규정되어 있다.<sup>14)</sup> 수의용약품을 포함한 약품의 판매승인에 관한 절차는 1662/95/EC에 규정되어 있다. 잔류량에 대한 모니터링은 지침 96/23/EC에 따라 시행된다. 이 지침은 이후 법규 806/2003/EC, 지침 2006/104/EC 등에 의해 개정되었다. 식육내 호르몬에 대한 사항은 지침 96/22/EC에 규정되어 있다.

오염물질에 대한 정의와 함께 설정 절차 및 일부 목록은 법규 315/93/EEC에 규정되어 있다.<sup>15)</sup> 시금치의 질산염 등에 대한 기준은 법규 1881/2006/EC에 설정되어 있다. 이들 2개 법규를 근간으로 법규 1126/2007/EC 등 다수의 법규를 통해 오염물질 목록을 업데이트 하고 있다.

잔류농약에 대한 최대잔류허용량과 설정절차 등은 법규 396/2005/EC에 규정되어 있다.<sup>16)</sup> 이 법규는 이후 법규 178/2006/EC, 149/2008/EC에 의해 업데이트 되고 있다.

12) [http://ec.europa.eu/food/food/chemicalsafety/additives/new\\_regul\\_en.htm](http://ec.europa.eu/food/food/chemicalsafety/additives/new_regul_en.htm)

13) [http://ec.europa.eu/food/food/chemicalsafety/additives/new\\_regul\\_en.htm](http://ec.europa.eu/food/food/chemicalsafety/additives/new_regul_en.htm)

14) <http://www.fsai.ie/WorkArea/linkit.aspx?LinkIdentifier=id&ItemID=3450>

15) [http://www.fsai.ie/legislation/food\\_legislation/contamination\\_of\\_foodstuffs/food\\_contaminants.html](http://www.fsai.ie/legislation/food_legislation/contamination_of_foodstuffs/food_contaminants.html)

16) [http://www.fsai.ie/legislation/food\\_legislation/pesticides\\_residues/general\\_provisions.html](http://www.fsai.ie/legislation/food_legislation/pesticides_residues/general_provisions.html)

---

### 2.1.7. 생물학적 안전

식품위생은 식품의 위생(Hygiene of Foodstuffs), 동물성식품에 대한 특별한 위생 법규(Specific Hygiene Rules for Food of Animal Origin), 식품의 미생물 기준(Microbiological Criteria for Foodstuffs), 집행규정(Implementing Rules), 새로운 규정을 위한 임시 수단(Transitional Measures for the New Rules)이라는 소위 위생 패키지로 구성되어 있다.<sup>17)</sup>

법규 852/2004/EC에는 식품영업자의 일반적인 의무와 함께 식품영업자의 등록 및 승인, 위해요소중점관리(HACCP), 개인위생 및 훈련 등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다. 동물성 식품은 식품영업자의 일반적인 의무와 등록 및 승인 등이 별도로 규정된 법규 853/2004/EC에 따라 보다 강화된 관리를 받게 된다. 미생물 기준은 법규 2073/2005/EC에 규정되어 있다. 이 법규에는 기준과 함께 채취 및 검사에 대한 사항까지 명시되어 있다. 위생 법규를 집행하기 위해 입력해야하는 정보의 종류 등은 법규 2074/2005/EC에 규정되어 있다.

### 2.1.8. 공식 관리(official control)<sup>18)</sup>

EU차원의 공공관리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은 일반식품법인 법규 178/2002/EC에 규정되어 있다. 이와 별도로 법규 882/2004/EC는 회원국들이 식품법을 집행하고 관련 사항의 준수 정도를 모니터링 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이를 위해 담당기구(Competent Authority)의 지정과 권한의 위임 등에 대한 사항 규정하고 있다.

위생에서 일반식품과 별도로 동물성 식품에 대한 사항을 규정한 것과 같이, 공식 관리에서도 법규 854/2004/EC를 통해 동물성 식품과 관련된 기구에 대한 사항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수입식품의 경우, 수출국에서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경우 등 수입검사 강화가 필요한 경우에 대비하기 위해 법규 669/2009/EC을 제정하였다. 이 법규에서는 관리강화 품목이 들어올 수 있는 검사소에 대한 최소 요구 조건 등이 규정되어 있다. 개별 품목에 대해서는 별도의 법규를 제정한다. 예를 들어 후쿠시마 사고로 인한 일본산 식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법규 495/2013/EC으로 증명서 첨부 등의 특별조건을 부과하였다.

---

17) [http://www.fsai.ie/legislation/food\\_legislation/food\\_hygiene/introduction.html](http://www.fsai.ie/legislation/food_legislation/food_hygiene/introduction.html)

18) [http://www.fsai.ie/legislation/food\\_legislation/food\\_hygiene/implementing\\_measures.html](http://www.fsai.ie/legislation/food_legislation/food_hygiene/implementing_measures.html)

## 2.2. 영정 세계

### 2.2.1. 개요

EU의 식품안전관리는 집행위원회를 중심으로 정책방향이 결정되고 회원국이 현장에서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그렇다보니, 일반 국가의 중앙정부가 수행하는 주요 기능을 담당하는 EU 기관들이 있다.

통상적인 중앙정부의 부처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은 집행위원회의 보건소비자총국(DGSANCO)이다. 여기에서 법안이 마련되고 주요 정책 결정이 이루어진다. 총국은 내부 조직을 활용해서 직접 조사 기능을 수행하기도 하고, 산하 기관을 통해 교육기능을 수행하기도 한다. 총국이 수행하는 대표적인 조사로는 식품수의국(Food and Veterinary Office)에서 수행하는 회원국의 식품안전관리 역량 평가가 있다. 소비자·보건·식품 집행기구(Consumers, Health and Food Executive Agency)에서는 안전한 식품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정책결정과 분리해서 위해성 평가를 담당하는 기관으로 유럽식품안전청이 있다. 식중독 사고 등으로 인한 질병 통계 등은 유럽질병통제센터가 담당한다. 예를 들어, 2012년 질병통제센터는 EU의 인수공통전염병과 식인성 질병 발생현황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다.<sup>19)</sup> 식품안전과 관련된 연구개발은 보건소비자총국이 아닌 연구개발총국(DG for Research)에서 담당하고 있다.

### 2.2.2. 보건소비자총국

보건소비자총국에서는 식품안전과 함께 보건, 소비자, 동물과 식물 질병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과거 별도 기관으로 운영되던 식품수의국(FVO)은 내부 조직으로 재편되었다. 총국의 직원은 모두 960명이다. 이중 660명은 본부가 있는 브뤼셀에 있고, 식품수의국 직원 180명은 아일랜드 더블린 근교의 그레인쥐(Grange)에 있다.

총국의 부서 중 식품체인안전(Safety of the Food Chain), 식품수의국, 수의·국제협력(Veterinary and International Affairs)의 3개부서가 식품안전과 관련되어 있다. 총국에는 국장(Director General) 밑에 두 명의 부국장(Deputy Director General)이 있는데, 이중 한명이 이들 3개 부서를 담당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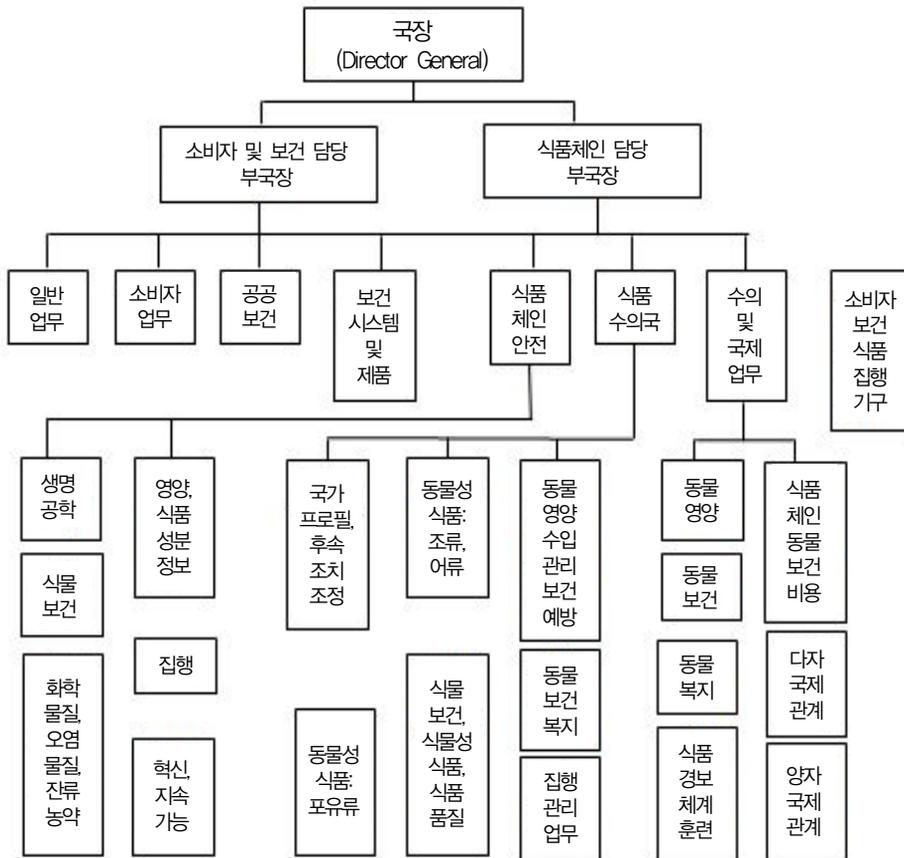
식품체인안전 부서에서는 바이오테크놀로지, 화학물질, 오염물질, 농약, 영양과 식

19) [http://www.ecdc.europa.eu/en/press/news/\\_layouts/forms/News\\_DispatchForm.aspx?List=8db7286c-fe2d-476c-9133-18ff4cb1b568&ID=956&ContentTypeId=0x010082EE625D0C434588A3E95C31FC12D7A70104000C92BA0F0E932049B9C0FB633C874119](http://www.ecdc.europa.eu/en/press/news/_layouts/forms/News_DispatchForm.aspx?List=8db7286c-fe2d-476c-9133-18ff4cb1b568&ID=956&ContentTypeId=0x010082EE625D0C434588A3E95C31FC12D7A70104000C92BA0F0E932049B9C0FB633C874119)

품성분 및 정보, 집행, 혁신과 지속가능성 관련 정책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수의·국제 협력 부서에서는 동물 영양 및 보건, 복지와 경보 시스템, 다자 및 양자 협력 등을 담당하고 있다.

식품수의국은 EU 역내에서 식품안전과, 동물보건 및 복지, 식물보건 관련 규제가 잘 준수되고 있는지를 점검 한다.<sup>20)</sup> 또한 제3국에서 EU로 수출되는 제품이 EU 요구조건을 잘 준수하고 있는지도 점검한다. 올해 발표된 향후 3년간 업무 계획을 보면 그림 2와 같다. 회원국의 긴급대응 체계는 물론 가금류에 대한 살모넬라 국가 관리 프로그램의 운영상황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그림 1 EU 보건소비자총국(DGSANCO) 조직도



주: DGSANCO에서 제공하는 도표를 단순화, 재편집하였음.  
 자료: DGSANCO Organization Chart, DGSANCO, 2014.1.16

20) [http://ec.europa.eu/food/tvo/index\\_en.cfm](http://ec.europa.eu/food/tvo/index_en.cfm)

그림 2 EU 식품수의국 3개년 업무계획(2014년)

구분	2014	2015	2016
횡적인 우선순위 (cross-cutting)	위기상황준비		
	HACCP		
	실험실		
	유기농업/지리적 표시		
	양식		
	합성제품		
	수입관리 조화		
	가금류		
기타 횡적인 공식 활동	식품 첨가물		
	도축 후 이력추적		
일반적인 후속조치	일반적인 후속 감사		
	국가 감사 시스템		
동물성식품/포유류	위생 패키지 : 식육/유		
	젤라틴 & MSM		
	혈액 생산품		
	분쇄 지방		
동물성식품/조류 및 어류	위생 패키지 : 가금육 및 관련 제품		
	가금류에 대한 살모넬라 국가 관리 프로그램		
	위생 패키지 : 조개류		
	위생 패키지 : 수산 생산품		
식물성 식품	마케팅과 농약 사용; 잔류농약 감사에 대한 후속조치		유기농업에서 잔류농약 검사
	농약 : 지속적인 사용 지침 하에서의 국가 액션 플랜		

자료: Food & Veterinary Office – Work Programme 2014, FVO, 2014.

2013년 관리계획(Management Plan)에 따르면, 보건소비자총국은 미션을 리스본 조약(Lisbon Treaty)에서 말하는 웰빙(Well-being)을 추구한다는 취지에서 유럽시민들이 보다 건강하고 안전하고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자(Making Europe's Citizens Healthier, Safer and More Confident) 로 설정하고 있다. 식품안전과 관련해서는 <표 5>에 제시된 바와 같이 주요 식중독 사고 발생률을 핵심 지표로 설정하고 있다.

보건소비자총국의 의사결정은 식품체인동물보건상임위원회(Standing Committee on the Food Chain and Animal Health, 이하 상임위원회)와 자문그룹(Advisory Group)의 지원

표 5 EU 보건소비자총국 성과목표

일반목표	지표	목표	중간지표	현재 상황
식품이 안전하고 건전한 것을 보장	EU 역내에서의 주요 식인성 질병(BSE와 살모넬라) 발생률	BSE: 2015년까지 연간 최대 10건 이내로 감소 살모넬라: 2018년까지 5만건 이하로 식중독 사고 감소	전년도에 비해 매년 20% BSE 발생건수 감소 및 5% 사람에게서 살모넬라 발생 건수 감소	2004년부터 2011년 사이에 30-45% 연간 BSE 발생건수 감소 및 전년도에 비해 사람에게서 살모넬라 발생건수 5% 감소

자료: 2013 DGSANCO Management Plan, DGSANCO, 2012.

을 받는다. 상임위원회는 일반식품법에 따라 설치된 기구로 각 회원국과 집행위원회의 대표로 구성되며, 집행위원회의 대표가 위원장을 맡는다. 이 위원회에서는 일반식품법, 식품체인의 생물학·독성학적 안전, 관리 및 수입 조건, 동물 영양, GMO와 환경 위험, 동물보건 및 복지, 식물약학 등에 대한 사항을 검토해왔다. 자문그룹은 농민, 식품산업, 유통업, 소비자 관련 45개의 기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식품 및 사료의 표시, 식품 및 사료의 안전, 식품법제와 관련된 인체 영향, 동물의 보건 복지와 식물의 보건에 대해 의견을 제시한다.

### 2.2.3. 유럽식품안전청

유럽식품안전청(European Food Safety Authority, EFSA)은 1990년대 일련의 식품사고에 따라 2002년 1월 수립되었다.<sup>21)</sup> 유럽식품안전청은 식품과 사료의 안전과 관련해서 위해성 평가를 담당하는 기관으로 과학적인 자문을 하고 정보교류 업무를 수행한다. 예산은 EU의 지원을 받지만, 집행위원회나 의회 및 개별 회원국과는 독립적으로 움직인다. 유럽식품안전청의 업무 범위는 식품과 사료의 안전, 영양, 동물 보건과 복지, 식물 보호 및 보건까지 포괄한다. 또한 생물 다양성과 동물 서식지에 대한 식품 체인의 영향도 고려한다. 이를 위해 GMO, 잔류농약, 사료 첨가물, 식물질병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다.

유럽식품안전청은 설립 후 초기 5년간 450건의 과학적 의견을 제시하였다.<sup>22)</sup> 여기에는 소해면상뇌병증(BSE), 전과성 해면성 뇌증(TSE), 아스파탐과 같은 식품첨가물, 알레르기성 식품원료, GMO, 야생 및 양식 어류, 잔류농약, 조류인플루엔자와 같은 동물 보건 이슈가 포함되어 있다. 유럽식품안전청은 위해성 평가방법론의 조화 등 자체적으로 발굴한 사항에 대해서도 과학적 자문을 실시한다. 예를 들어, 암을 유발시킬 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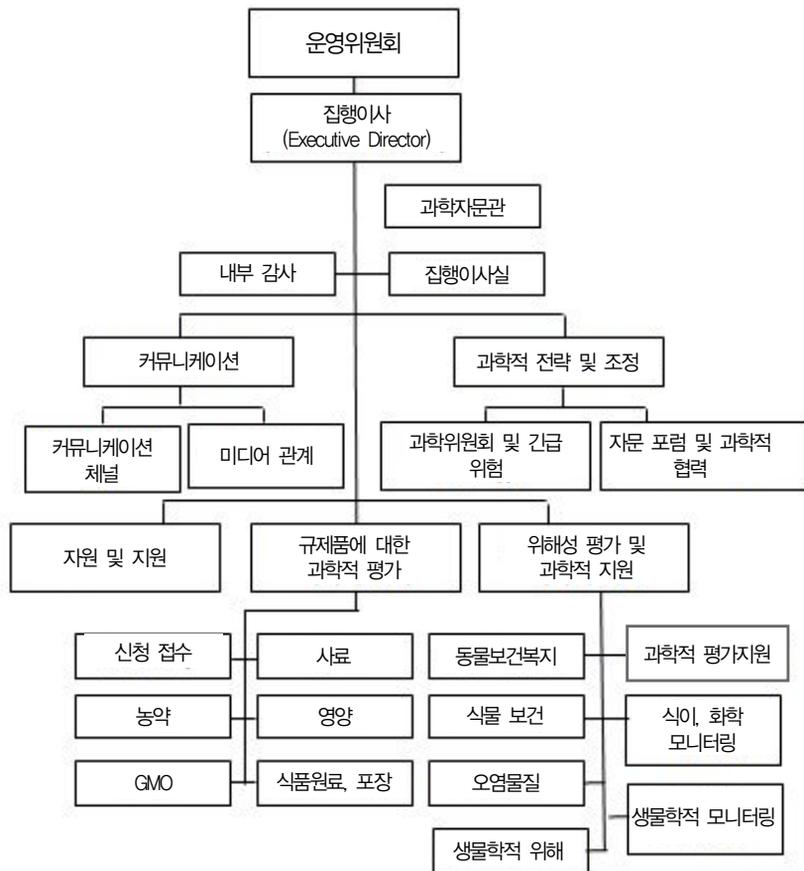
21) <http://www.efsa.europa.eu/en/aboutefsa.htm>

22) <http://www.efsa.europa.eu/en/efsawhat/riskassessment.htm>

능성이 있는 물질에 의해 발생하는 위험을 비교하기 위한 접근법의 조화나 항생제 내성 마커 유전자의 생물학적 안전성에 대한 자문을 들 수 있다. 유럽식품안전청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는 위해성 평가가 가능한 가장 완벽한 과학적 정보에 기초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과학적 데이터를 수집,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회원국 정부와 협력 체계를 구축하거나 공개적인 자문과 데이터 요청 등의 절차를 운영하고 있다.

유럽식품안전청은 과학적 평가결과를 효과적으로 대중에게 전달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고 있다. 우선, 식품과 관련된 대중의 인식도를 분석한다. 가장 최근에 발표된 자료는 2010년 27개 회원국의 15세 이상 26,69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위해인지

그림 3 유럽식품안전청(EFSA) 조직도



주: 유럽식품안전청에서 제공하는 도표를 단순화, 재편집하였음.  
 자료: EFSA Annual Report 2012, EFSA, 2013.

---

도 조사결과<sup>23)</sup>이다. 위해정보교류 자문그룹(Advisory Group on Risk Communication)으로부터 자문을 받으면서 맥락을 설명한다. 현재 운영 중인 자문그룹에는 6명의 전문가가 참여하고 있다.<sup>24)</sup> 다양한 청중들에게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회원국 기관과 이해관계자 미디어에 있는 핵심관계자와 작업을 한다. 집행위원회, 의회 등 다른 EU 관련 기관과도 조정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유럽식품안전청의 조직도는 <그림 3>과 같다. 사업부서로 농약, GMO, 사료, 영양, 식품 원료 및 포장과 같은 규제 제품의 과학적 평가(Scientific Evaluation of Regulated Products)를 담당하는 부서가 있고, 오염물질, 생물학적 위해, 식이 및 화학 모니터링, 생물학적 모니터링, 동물 보건과 복지, 식물보건 등 위해성 평가 및 과학적 지원(Risk Assessment & Scientific Assistance)을 담당하는 부서가 있다. 그 밖에 과학 전략과 조정(Science Strategy & Coordination), 커뮤니케이션(Communications), 자원 및 지원(Resources & Support)을 담당하는 부서가 있다.

### 3. 식품안전 정책 최근 동향

#### 3.1. 개요

EU의 식품안전 정책 동향을 살펴보기 위해 아일랜드 식품기준청(Food Safety Authority of Ireland)에서 제공하고 있는 2012년 11월부터 2013년 10월까지 1년간 발표된 EU의 법규 등 주요 결정사항<sup>25)</sup>을 분석하였다.<sup>26)</sup>

의사결정의 유형별로 살펴보면, <표 6>에 제시된 바와 같이 지난 1년 동안 법규 203건, 지침 2건, 27건의 결정 등 모두 232건의 법적 강제력이 있는 의사결정이 이루어졌다. 법규 중에는 기존 법규를 시행하기 위한 법규가 140건이었으며, 일반 법규가 63건이었다. 그 밖에 3건의 권고가 있었으며, 기존 법규 등의 오류를 수정하는 정오표가 10건 발표되었다. 그 밖에, 각 회원국의 식품안전관리 체계에 대한 평가내용을 담은 보고서<sup>27)</sup>가 발간되었다.

---

23) <http://www.efsa.europa.eu/en/riskcommunication/riskperception.htm>

24) <https://ess.efsa.europa.eu/doi/doiweb/wg/8543>

25) [http://www.fsai.ie/legislation/legislation\\_update.html](http://www.fsai.ie/legislation/legislation_update.html)

26) [http://www.fsai.ie/legislation/legislation\\_update/january\\_2013.html#EU\\_legislation](http://www.fsai.ie/legislation/legislation_update/january_2013.html#EU_legislation)

27) [http://ec.europa.eu/food/fvo/country\\_profiles\\_en.cfm](http://ec.europa.eu/food/fvo/country_profiles_en.cfm)

표 6 EU의 식품안전 관련 주요 정책결정 현황(2012.11-2013.2)

구분	총계	법규(Regulation)		지침(Directive)	결정(Decision)		권고(Recommendation)	기타	
		일반	시행		일반	시행		보고서(Report)	정오표(Corrigendum)
총계	246	63	140	2	1	26	3	1	10
식품첨가물	27	26	1						
오염물질(잔류물질 포함)	8	5		1			1		1
잔류허용기준	25	12	11						2
식품표시 및 영양	16	11	2	1		1			1
지리적 표시	94	2	91						1
판매기준	13		11						2
신종식품 및 GMO	6		1			5			
동물보건	9	2	1		1	5			
공공관리	46	4	21			15	2	1	3
거버넌스	2	1	1						

자료: 내부자료, 2014.

의사결정의 내용별로 살펴보면, <표 6>에 제시된 바와 같이 원산지 등 지리적 표시와 관련된 사항이 95건으로 제일 많았다. 그 다음으로 수입식품 관리 등을 위한 공공관리(Official Control) 46건, 식품첨가물 26건, 잔류허용기준 25건, 식품표시 및 영양 15건의 순이다. 그 밖에 판매기준(13건), 동물보건(9건)이나 오염물질(8건), 신종식품 및 GMO(6건) 등이다. 각 분야별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 3.2. 와약적 위애

#### 3.2.1 식품첨가물

유럽식품안전청은 그간 식용 향료로 사용이 허용되던 3-아세틸-2,5-디메틸티오펜(3-acetyl-2,5-dimethylthiophene)에 대한 안전성 평가를 실시하였다.<sup>28)</sup> 그 결과, 시험관 시험(in vitro)에서는 물론 인체 시험(in vivo)에서 돌연변이를 유발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에 따라, 법규 1334/2008의 허용 목록에서 이 향료가 삭제되었다. 다만, 그간 사용량이 매우 낮아 안전에 큰 위험은 초래하지 않았다고 한다.

유럽식품안전청이 23개 향료(Undeca-1,5-dien-3-ol 등)에 대해 안전성 평가를 실시한 결과, 안전한 것으로 확인되었다.<sup>29)</sup> 이에 따라, 현재 평가중이라는 문구가 해당 법규

28) 법규 545/2013/EU.

29) 법규 985/2013/EU.

---

에서 삭제되었다.

해초를 활용해서 만든 생선 알 유사품에 대한 첨가물 사용이 허용되었다. 허용된 첨가물은 커큐민(Curcumin), 리보플라빈(Riboflavins), 코치닐(Cochineal), 로즈마리 추출물(Extracts of rosemary), 안토시아닌(Anthocyanins) 등 16종<sup>30)</sup>이다.

### 3.2.2 오염물질

EU 집행위원회는 2010년 12월 식육 표면의 오염을 줄이기 위한 젖산(lactic acid)의 사용 허가 신청을 받았다.<sup>31)</sup> 2011년 7월 유럽식품안전청에서는 평가 결과, 젖산의 안전성 및 효과성에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에 따라, 집행위원회에서는 2013년 2월 식육 등의 표면에 식품첨가물로 사용되고 있는 젖산의 사용을 허가하였다. 허용조건에는 2.5%의 젖산 용액 사용 등 세부적인 조건이 포함되어 있다.

집행위원회는 다양한 푸사리움 중에 의해 생성된 T-2 독소와 HT-2 독소에 대한 안전성 평가 의견 제출을 유럽식품안전청에 요청하였다<sup>32)</sup>. 하지만, 데이터 부족 문제가 제기되었고, 집행위원회는 회원국 정부에 식품 및 사료 사업자와의 활발한 협력활동을 통해 곡류 및 곡류 제품에서 이들 독소 함량에 대한 모니터링 할 것을 권고하였다.

### 3.2.3 잔류허용기준

농약인 8-하이드록시 퀴놀(8-hydroxyquinoline), 시프로코나졸(cyproconazole), 시프로디닐(cyprodinil), 플루오피람(flupyram), 니코틴(nicotine), 펜디메탈린(pendimethalin), 펜사이오피라드(penthiopyrad), 트리플록시스토로빈(trifloxystrobin)의 각 농산물 품목별 잔류기준이 변경되었다.<sup>33)</sup>

2013년부터 3년간 진행되는 농약의 최대 잔류기준을 준수하고 있고 잔류농약에 대한 소비자의 노출 정도를 평가하기 위해 다년도 관리 사업을 수행 중에 있다.<sup>34)</sup> 이 사업에 새롭게 추가된 모니터링 대상 농약이 있는데, 아직 일부 공인분석센터에서 이에 대한 준비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해당 농약에 대해서는 자율적으로 모니터링을 하면 된다.

---

30) 법규 738/2013/EU.

31) 법규 101/2013/EU.

32) 법규 2013/165/EU.

33) 법규 1004/2013/EU.

34) 법규 480/2013/EU.

### 3.3 생물학적 위해

#### 3.3.1 신종식품 및 GMO

2004년 한 회사(DSM Nutritional Products VML)가 네덜란드 정부에 합성 제아잔틴(Zeaxanthin)을 신종 식품원료로 판매할 수 있도록 허가를 요청하였다.<sup>35)</sup> 제아잔틴은 크산토펜(Xanthophyll) 색소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하며 카로티노이드 산화물이다. 합성 제아잔틴은 작은 분자에서부터 여러 단계를 거쳐 합성된다. 집행위원회는 하루 2mg 이내의 섭취를 조건으로 합성 제아잔틴의 판매를 허용하였다. 다만, 이 성분을 함유한 식품에는 합성 제아잔틴이라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 3.3.2 동물보건

법규 999/2001/EC에서는 전파성 해면성 뇌증(TSE)의 예방관리를 위한 규칙을 제시하고 있다.<sup>36)</sup> 여기에는 동물성식품의 시장판매와 관련된 요구조건 등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소, 양, 염소에서 이를 신속하게 측정할 수 있는 검사법도 명시하고 있다. 2012년 5월, 유럽식품안전청은 새로운 TSE 검사방법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가 적합하다는 판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이 검사법에 법규 999/2001/EC에 추가되었다.

### 3.4 식품표시 및 영양

#### 3.4.1 건강정보 표시

현재 EU 건강정보표시 법규에서는 유럽식품안전청에서 신청 받은 건강정보표시의 적정성을 판단하고, 적정한 경우는 물론 부적정한 경우에도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 최근 법규 1066/2013/EU에 따라, <표 7>에 제시된 17건의 건강정보표시가 거절된 정보표시 목록에 추가되었다. 다만, 2013년 11월 이전에 생산된 제품은 최대 6개월간 판매를 할 수 있다.

#### 3.4.2 지리적 표시

현재 지리적 표시는 회원국 정부가 신청을 하고 있으며, 지난 1년간 허용 또는 수정된 지리적 표시는 모두 92건이다. 이중 이탈리아가 24건(27%)으로 가장 많고, 프랑스(14건, 16%), 스페인(12건, 13%), 독일(11건, 12%), 영국(8건, 9%), 포르투갈(7건, 8%), 그리스(5건, 6%) 순이다. 태국과 관련된 경우도 1건 있다.

35) 결정 2013/50/EU

36) 법규 1064/2012/EU.

표 7 EU의 비허용 건강정보표시 목록

원료 및 제품명	표시 내용
글루코사민 (Glucosamine)	과도한 움직임 또는 하중에 노출되는 관절 연골의 보호에 기여하고 관절 운동 범위를 개선하는 데 도움 정상적인 관절 연골의 유지에 기여
밀 극성 지질추출물 (Wheat polar lipid extract)	피부의 수분 함상에 기여
Saccharomyces cerevisiae var. boulardii CNCM I-3799	장을 편안하게 유지하는데 도움
티아민, 리보플라빈, 나이아신, 판토텐산, 피리독신, D-비오틴, 호박 종자 오일 혼합물	모발 수를 증가시키는데 도움을 줌
Rhodiola rosea L. 추출물	스트레스의 경우, 피로를 줄일 수 있음
아미씨 오일과 비타민 E 조합	피부의 침투성 장벽 기능 유지에 기여
Opti EFAX™	LDL 콜레스테롤의 건강한 혈액을 유지하는 데 도움
	HDL 콜레스테롤의 건강한 혈액 수준을 유지하는 데 도움
	트리글리세리드의 건강한 혈액 수준을 유지하는 데 도움
KF2BL20	모발의 강도를 유지하는데 도움
히아루론산(hyaluronic acid)	좋은 피부 수분을 유지하는데 도움
Transitech®	장 통과를 향상시키고 이를 조절함
Femilub®	질건조증을 감소하는데 도움을 줌
리코펜, 비타민 E, 루테인, 셀레늄의 조합	태양으로부터의 내성을 향상시켜 민감한 피부에 도움
Prolibra®	근육을 유지하면서 체지방을 줄이는데 도움을 줌
Eff EXT™	혈장 C-반응성 단백질의 낮은 수준을 유지하여 관절 기능을 유지하는데 도움

자료: 내부자료, 2014.

### 3.5 관리 체계

#### 3.5.1 공공관리

공공관리(Official Control)는 지리적 표시와 함께 가장 자주 법규가 제정되는 분야이다.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는 가장 큰 이유는 수입식품조건을 법규의 형태로 설정하기 때문이다.

보스와나 4개 지역에서 생산하는 신선 식육의 수입이 허용되고 있는데, 2013년 집행 위원회는 이 지역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sup>37)</sup> 그 결과 가축전염병관리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정되어 수입허가 승인이 잠정 중단되었다.

인도에 대한 식품수의국의 조사결과에 따라, 현재 약리활성물질에 대한 최소 검사

37) 법규 482/2013/EU.

기준이 설정되었다.<sup>38)</sup> 이러한 의무적인 검사는 클로람페니콜, 테트라 사이클린, 옥시 테트라 사이클린과 클로르 또는 니트로 푸란의 대사 물질의 잔류에 대한 정보와 함께 인도에서 발생하는 양식 제품의 오염 가능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 3.5.2 판매기준

현재 법규 543/2008/EC에 따라, 냉동 및 급속냉동 닭고기와 일부 가금류 절단품은 정해진 검사법에 따라 기술적으로 피할 수 없는 수 없는 수준으로 수분 함량이 낮은 경우에 한해서 판매가 허용된다. 기존 법규를 개정하는 법규 1239/2012/EU에서는 냉장, 냉동 기술의 발달에 따른 새로운 기술의 발전을 감안해서 제한치를 설정하였다.

## 4. 결론

통상적으로 EU는 국가 연합체로서 우리나라에 직접적으로 적용하는데 다소 무리가 있다. 회원국들이 현재 국제적으로 하나의 국가로 활동하고 있다. 그렇다 보니 많은 정책분야에서 각 국가별 각기 다른 정책이 집행되고 있다. 하지만, 단일시장을 지향하는 EU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회원국의 자치권을 제한하고 EU 차원의 정책을 운영하는 분야가 있는데, 그 중 하나가 바로 식품안전 분야이다. 과거 지침을 통해 회원국에 자율성을 주던 시절과 달리 최근에는 법제 제정을 통해 직접적으로 회원국내 사업자를 규제하는 법규를 주로 활용하고 있다. 2012년 11월부터 2013년 10월까지 발표된 주요 결정사항을 살펴보면, 법규가 203건인 반면, 지침은 2건에 불과할 정도로 EU 차원에서 의사결정이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EU의 식품안전 법제를 파악하는데 현실적으로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 법규를 일반적인 법규(Regulation)와 집행을 위한 법규(Implementing Regulation)로 이원화해서 운영함에 따라, 의회에서 제정하는 법(Act)과 행정부에서 운영하는 법규(Regulation)로 이원화되어 있는 미국과 비슷한 형태를 띠게 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EU 규제 현황을 파악하는데 있어서 다음과 같은 어려움이 있다. 우선, 통합법전을 운영하는 미국과 달리 EU는 일부에 한해서 통합법(Consolidated Regulation)을 마련하고 있다. 그렇다보니, 관련 개정 법규와 지침을 모두 찾아야 해당 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 두 번째로 EU는 회원국 정부를 통해 집행을 하다 보니 연방기관이 직접 집행하는 미국 등

38) 법규 1012/2012/EU.

---

다른 국가와 달리 세세한 내용도 모두 법규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수입식품에 대한 위생조건이다. 통상적으로 국가기관에서 고시 정도의 수준으로 운영하는 것과 달리 EU에서는 모두 법규의 형태로 운영된다.

EU의 규제 운영은 매우 투명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측면은 우리도 검토·도입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행정기관의 판단에 따라 규제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 한하여 고시 등의 형태로 외부에 기관의 결정을 알리고 있다. 반면, EU는 기존 규제가 달라지지 않더라도 행정적 판단 내용을 알림으로써 결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있다. 대표적 사례로 유럽식품안전청 심사 결과, 불허되는 건강정보표시의 목록도 법규의 형태로 공개한다는 점이다. 우리나라에서는 표시 승인이 거절되는 경우, 해당 사실을 신청자에게만 통지할 뿐 외부에는 별도로 공지하지 않는다. EU의 이러한 접근은 단순히 결정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뿐만 아니라, 관련 제품을 준비하는 다른 사업자에게도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효과적이다.

국제적 교역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위해정보가 빠르게 전파되는 상황에서 EU의 정책동향 파악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다. 2005년 발생했던 말라카이트 그린 사건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2003년부터 EU에서 수산양식에 말라카이트 그린 사용을 금지했던 것을 모르고 우리는 수산양식에서 말라카이트 그린 사용을 허용하였다. 그 결과, 중국산은 물론 국내산 양식 수산물에서 말라카이트 그린이 검출됨으로써 큰 혼란을 치른바 있다. 국제적인 동향을 파악하기 가장 좋은 국가 중 하나가 EU이다. EU는 미국 같은 연방국가와 달리 회원국의 목소리가 강하다보니 상대적으로 논의 결과가 매우 상세하게 일반에 공개된다. 따라서 선진국의 동향을 파악하는 바로미터가 될 수 있다. 앞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같은 식품안전 주무부처는 물론 수출업무를 담당하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수부에서도 EU의 동향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 참고문헌

DGSANCO. 2014.4.16. DGSANCO Organization Chart. DGSANCO.  
Food & Veterinary Office. 2014. Work Programme 2014. FVO.  
DGSANCO. 2012. 2013 DGSANCO Management Plan. DGSANCO.  
EFSA. 2013. EFSA Annual Report 2012. EFSA.

### 참고사이트

아일랜드 식품안전청 ([www.fsai.ie](http://www.fsai.ie))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eu.europa.eu](http://eu.europa.eu))  
유럽 질병예방통제센터 ([www.ecdc.europa.eu](http://www.ecdc.europa.eu))  
유럽식품안전청 ([www.efsa.europa.eu](http://www.efsa.europa.eu))